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

#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Ⅲ

---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139p ]

2017. 11.

  
마포구

# 목 차

## 제3권. 예산(안) 첨부서류

I.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
I -1. 재정지표 .....	1
I -2. 통합부채 현황 .....	2
I -3. 우발부채 현황 .....	3
I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3
I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3
I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3
I -7. 재정분석(2016단체별보고서) .....	4
II.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	7
III.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	23
IV. 정원표 .....	33
V. 명시이월 현황 .....	34
VI. 공유재산 현황 .....	37
VII.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현황 .....	38
VIII. 2016년 일반특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등 .....	39
IX.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	41

# I.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1-1. 재정지표

### □ 세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규모	세입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및 교부세	순세계 등	보조금
총 액	573,540	102,619	75,837	96,476	87,432	211,176
일반회계	503,183	102,619	53,697	96,476	42,702	207,689
특별회계	70,357	0	22,140	0	44,730	3,487

###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단위 : 일반회계 본예산기준, %)

구 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비 율	31.1	32.9	△1.8	50.2	51.1	△0.9

☞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 □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규모	세출현황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소계	비율	인력운영비	비율	기본경비	비율
총 액	573,540	445,298	77.64	1,168	0.20	127,074	22.16	117,623	92.56	8,849	7.44
일반회계	503,183	378,653	75.25	1,168	0.23	123,362	24.51	114,118	92.51	8,643	7.49
특별회계	70,357	66,645	94.72	0	0	3,712	5.27	3,505	94.42	206	5.58

☞ 비율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사업분류별 차지하는 규모임.

### □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총규모	정책사업				
		소 계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총 액	573,540	445,298	146,573	32.92	298,726	67.08
일반회계	503,183	378,652	100,061	26.43	278,592	73.57
특별회계	70,357	66,646	46,512	69.79	20,134	30.21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전출금 등 내부거래)은 제외.

□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총규모	정책사업비	총규모내	비율	정책사업비내	비율
총 액	573,540	445,298	260,914	45.49	260,714	58.55
일반회계	503,183	378,652	260,477	51.77	260,277	68.74
특별회계	70,357	66,646	437	0.62	437	0.66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및 정책사업 총액 중 사회복지분야 전체 및 정책사업비 내 예산 비율

□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 중 인건비 비율

(단위: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자체재원 (지방세+세외수입)	인건비 (101목)	비율
예산액	503,183	156,316	90,229	57.72

☞ 인건비의 경우, 보수(일반직, 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직(101-03)

□ 예비비 확보 : 4,900백만원

1-2.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통합자산	2,857,757	3,146,912	289,155
통합부채	52,529	36,584	△15,945
유동부채	30,464	22,316	△8,138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2,075	14,268	△7,807

- ▶ '16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마포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단 1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 동 부 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 기 차 입 부 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에수보증권 및 미지급금 등

### 1-3. 우발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법정의무액	보조의무액	재량지출액	비 고
계	573,540	337,204	127,811	108,525	
일 반 회 계	503,183	298,043	127,193	77,947	
특 별 회 계	70,357	39,161	618	30,578	

###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지방행정감사 1국 제1과)	2017.6.8.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미부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양천구 기민운영감사)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 과점주주 12명에게 취득세 등 계 50,894,160원 부과. 징수(시장)	2017. 3. 31. 취득세 등 납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 1국 제1과)	2017.6.23.	방송사 사옥 신축에 다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양천구 기민운영감사)	「지방세법」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화방송에 취득세 등 계 3,698,510,920원 부과. 징수(시장)	2017. 7. 31. 취득세 등 납부

###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해당없음

# 1-7. 재정분석 : 2016단체별 보고서 - 서울 마포구

##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km <sup>2</sup> )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79,892	23.84	562,031	429,153	132,878		39.8(29.8)	

##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동종단체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I. 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64%	8.49%	7.35%	-2.07%	4.90%	7.06%	9.17%	18.34%
	2.경상수지비율	86.12%	79.08%	91.85%	64.80%	77.43%	87.99%	102.19%	139.55%
	3.관리채무비율	0.00%	0.00%	0.63%	0.00%	0.00%	0.00%	0.68%	5.27%
	4.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4.91%	24.14%	18.42%	5.36%	11.83%	15.19%	22.38%	79.70%
	5. 통합유동부채비율	9.50%	14.57%	7.90%	2.46%	4.32%	7.10%	9.50%	45.78%
	6.공기업부채비율	358.76%	372.30%	61.74%	0.00%	0.00%	0.00%	87.20%	365.06%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0.45%	29.88%	39.49%	-615.36%	0.00%	0.00%	0.00%	2476.48%
	8. 지방세수입비율	17.99%	신규지표	14.00%	4.86%	10.54%	12.15%	16.32%	34.17%
	8-1. 지방세수입증감률	6.13%	신규지표	6.32%	0.39%	4.90%	5.90%	7.94%	12.90%
	9. 경상세외수입비율	6.28%	5.95%	4.31%	1.64%	2.99%	3.70%	4.87%	10.40%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3.77%	8.09%	8.98%	-8.30%	5.90%	8.93%	13.40%	21.93%
	10. 지방세징수율	99.43%	98.96%	98.64%	96.21%	98.26%	98.78%	99.25%	99.60%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9.99%	99.68%	98.81%	0.00%	100.01%	100.12%	100.26%	105.12%
	II.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체납관리비율	0.25%	0.61%	0.56%	0.11%	0.23%	0.34%	0.5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30%	7.12%	10.51%	-32.32%	-2.28%	8.66%	17.45%	73.98%
12. 세외수입체납관리비율		3.64%	4.39%	4.09%	0.58%	2.32%	3.50%	4.93%	13.1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4.27%	6.50%	14.96%	-50.68%	5.52%	11.40%	19.89%	84.27%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88	0.9419	-0.8743	0.9971	1.0000	1.0000	1.0249
14. 지방보조금비율		16.86%	18.52%	16.63%	5.26%	12.24%	17.80%	21.81%	28.83%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0.78%	6.99%	1.07%	-47.29%	-0.92%	2.59%	6.06%	21.8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35%	3.24%	1.26%	0.00%	0.00%	0.18%	2.55%	5.76%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1.19%	-8.25%	2167.85%	-99.30%	0.12%	5.85%	12.74%	113281.97%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94.10%	92.34%	88.05%	54.03%	81.55%	89.74%	96.91%	105.18%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62.44%	69.08%	74.39%	47.52%	61.84%	76.19%	86.64%	99.38%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47%	0.43%	0.44%	0.11%	0.23%	0.39%	0.56%	1.44%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8.39%	12.57%	6.42%	-44.79%	-4.77%	5.92%	16.22%	53.83%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0.43%	15.32%	14.53%	-22.23%	1.57%	8.34%	25.82%	83.60%	

###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30.45%)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11.2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자본금 8억원과 부채 28.7억원을 합한 총자본 36억 7천만원의 30.45%가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이 됨.
- 마포구 공기업 수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차장 수입(91.36억원)과 농수산물시장의 임대료수입(46.59억원)으로 공단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 다만 임대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할 금원으로 회계 상 부채로 계상되어 총자본이익률을 낮추게 되었음.

#### □ 지방세수입비율(17.99%)

- 지방세수입비율은 동종 단체 중 우수한 편에 속함.
- 공덕 아현 염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방세수입비율이 높음

#### □ 지방세징수율(99.43%)

- 지방세징수율은 동종 단체 중 매우우수한 편에 속함.
- 상암DMC 지구의 KBS, MBC 방송국과 기업이 속속 입주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마포 공덕 아현 지구 재개발 등으로 지방세 징수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음.
- 부구청장을 총괄단장으로「세입증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분기별 특별대책회의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전파, 부진분야 대책강구,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을 하였음. 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 납부 홍보활동 강화, 민원 친절응대 교육 등 납세편의시책 시행 노력도 기울임.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도 0.25%로 전년 0.61%보다 감소함. 체납 중점정리기간 설정.운영,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 운영, 조기 채권확보 및 신속한 체납처분 이행, 금융조사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의 결과임.

####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62.44%)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는 전년도보다 절감도가 더 크며 동종 단체 중 우수한 편에 속함.
- 업무추진비의 유보율을 설정하고, 업무추진비 지출 허용 조건을 엄격히 하여 유보율을 지킴.

##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 공기업부채비율(358.76%)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동종 단체 중에서는 매우 높은 측에 속함.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임대보증금은 부채이므로 금액 부채총액 28.7억원 자본 총액 8억원으로 358.76%의 비율을 보임. 시설관리공단 유동 부채는 13억원임.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99.99%)

-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수치 상은 높으나 동종 단체들의 좋은 실적으로 인하여 매우 미흡한 집단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노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출자출연 전출금비율(3.3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율(11.19%)

- 출자출연전출금증감율이 -8.25%에서 11.19%로 증가하여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도 증가하고 동종단체 중 저조한 실적을 구현하였음.
- 문화재단에 출연금과 전출금이 176억원 투입되었음. 노후시설을 인수하여 시설 개수 등에 비용을 출연 전출하여 지출함. 2012년 설립한 장학재단은 기금으로 운영하여 출연금이 지출되지는 않음.

### □ 민간위탁금비율증감율(40.43%)

- 민간위탁금비율증감율이 동종단체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보조금과 위탁사업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비목 간의 정리를 위해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위탁 선정 심사 시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나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음.

### □ 개선사항

- 부동산은 경기의 부침이 있으므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본예산도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함.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을 구분하여 자본 지출은 지방채로 조달하도록 하면 자원 부담과 지역발전 효과의 세대간 배분이 공평하게 되어 바람직함 측면이 많음.
- 도시도 생명체와 같이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므로 마포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나아가 안정적인 구정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자본예산도입과 더불어 레이니데이기금을 마련하면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황기의 기금 축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장기적인 도시 재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됨.

## Ⅱ.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6년 결산 및 2017년 추계기준)

###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16년(결산)	'17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55,452,930	62,848,921	7,395,991
비과세	45,821,171	51,930,075	6,108,904
감 면	9,631,759	10,918,846	1,287,087

####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천원, %)

분 야	'16년(결산)	비중	'17년(추계)	비중	비교 증감	증감률
<b>총 계</b>	55,452,930	100%	62,848,921	100%	7,395,991	100%
1 일반공공행정	36,987,011	66.70%	41,988,730	66.81%	5,001,719	67.63%
2 공공질서 및 안전	-	0.00%	-	0.00%	-	0.00%
3 교육	5,322,868	9.60%	6,068,132	9.66%	745,264	10.08%
4 문화 및 관광	2,034,122	3.67%	2,234,994	3.56%	200,872	2.72%
5 환경보호	190,448	0.34%	250,889	0.40%	60,441	0.82%
6 사회복지	1,059,580	1.91%	1,420,608	2.26%	361,028	4.88%
7 보건	-	0.00%	-	0.00%	-	0.00%
8 농림해양수산	59,248	0.11%	68,742	0.11%	9,494	0.13%
9 산업.중소기업	213,741	0.39%	162,851	0.26%	△50,890	△0.69%
10 수송 및 교통	187,585	0.34%	196,110	0.31%	8,525	0.12%
11 국토 및 지역개발	566,861	1.02%	519,953	0.83%	△46,908	△0.63%
12 과학기술	-	0.00%	-	0.00%	-	0.00%
13 국가	8,746,010	15.77%	9,892,236	15.74%	1,146,226	15.50%
14 외국	-	0.00%	-	0.00%	-	0.00%
15 기타	85,456	0.15%	45,676	0.07%	△39,780	△0.54%

###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천원, %)

분 야	'16년(결산)		'17년(추계)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b>총 계</b>	55,452,930	100%	62,848,921	100%	7,395,991	13%
보 통 세	55,452,930	100%	62,848,921	100%	7,395,991	13%
등 록 면 허 세	388,720	1%	377,508	1%	△11,212	△2%
재 산 세	55,064,210	99%	62,471,413	99%	7,407,203	13%

###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천원)

감 면 유 형	'16년(결산)	'17년(추계)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35,316,882	40,087,573	4,770,691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957	8,458	501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5,070	6,035	965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1,565,507	1,786,446	220,93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91,595	100,219	8,624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24,375	26,031	1,656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117,898	129,768	11,87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5,021,833	5,750,101	728,268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58,762	162,232	3,470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027,589	2,227,947	200,358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757	3,176	41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3,776	3,872	96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90,448	250,889	60,4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22,778	143,126	20,34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3,523	2,874	△649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424	1,488	6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19,012	0	△19,0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9,039	10,810	1,771

감 면 유 형	'16년(결산)	'17년(추계)	증감액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73,077	740,504	267,4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293,240	365,782	72,54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37,487	156,023	18,53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0	3,883	3,88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0,779	12,136	1,357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6,364	4,416	△1,94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42,105	48,307	6,20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9,902	13,340	3,43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8,373	38,590	217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20,549	20,624	75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32,738	6,686	△26,052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5,215	17,609	△27,60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2,855	20,644	△2,21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41,561	41,231	△33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0	792	79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40	214	17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508	3,122	614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87,585	196,110	8,52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44,721	451,318	6,59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2,140	68,635	△53,505
국가에 대한 비과세	8,690,030	9,876,337	1,186,307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55,978	15,898	△40,08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56,139	16,075	△40,06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8,362	28,506	144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955	1,096	141

##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일반공공행정</b>		<b>합 계</b>	36,987,011	41,988,730
1	<b>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b>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b>소 계</b>	35,316,882	40,087,573
		재 산 세	35,312,289	40,084,121
		등록면허세	4,593	3,452
2	<b>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b>소 계</b>	7,957	8,458
		재 산 세	7,957	8,458
		-	-	-
3	<b>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b>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b>소 계</b>	5,070	6,035
		재 산 세	5,070	6,035
		-	-	-
4	<b>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b>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b>소 계</b>	1,565,507	1,786,446
		재 산 세	1,565,507	1,786,446
		-	-	-
5	<b>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b>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b>소 계</b>	91,595	100,219
		재 산 세	91,475	99,925
		등록면허세	120	294
		-	-	-

## 2. 교 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교 육</b>		<b>합계</b>	5,322,868	6,068,132
6	<b>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b>소 계</b>	117,898	129,768
		재 산 세	117,871	129,768
		등록면허세	27	0
7	<b>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b>소 계</b>	5,021,833	5,750,101
		재 산 세	5,020,798	5,749,008
		등록면허세	1,035	1,093
		-	-	-
		-	-	-
8	<b>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b>소 계</b>	24,375	26,031
		재 산 세	24,375	26,004
		등록면허세	0	27
9	<b>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b>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b>소 계</b>	158,762	162,232
		재 산 세	158,762	162,232
		-	-	-

### 3.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문화및관광</b>		<b>합계</b>	2,034,122	2,234,994
10	<b>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b>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2,027,589	2,227,947
		재 산 세	2,027,373	2,227,758
		등록면허세	216	189
11	<b>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 계	2,757	3,176
		재 산 세	2,757	3,176
		-		
12	<b>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소 계	3,776	3,872
		재 산 세	3,776	3,872
		-		
		-		

### 4.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환경보호</b>		<b>합계</b>	190,448	250,889
13	<b>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b> -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재산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3①)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190,448	250,889
		재 산 세	190,448	250,889

## 5.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사회복지</b>		<b>합계</b>	1,059,580	1,420,608
14	<b>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b>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5①, ②)	<b>소 계</b>	137,487	156,023
		재 산 세	137,096	155,497
		등록면허세	391	526
		-		
		-		
		-		
15	<b>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b>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b>소 계</b>	122,778	143,126
		재 산 세	122,778	143,126
		-		
16	<b>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2호)	<b>소 계</b>	3,523	2,874
		재 산 세	3,523	2,874
		-		
17	<b>노동조합에 대한 감면</b>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	<b>소 계</b>	1,42	1,488
		재 산 세	1,424	1,488
18	<b>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b>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b>소 계</b>	19,012	0
		등록면허세	19,012	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		
		-		
19	<b>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b>	<b>소 계</b>	9,039	10,8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재 산 세	9,039	10,810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17①)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7호)	-		
		-		
		-		
20	<b>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	<b>소 계</b>	473,077	740,504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재 산 세	473,077	740,50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삭제)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삭제)	-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p>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li> <li>-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60/100*1/10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li> <li>-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li> <li>-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li> </ul>			
21	<b>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b>	<b>소 계</b>	293,240	365,782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재 산 세	26,206	33,894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등록면허세	267,034	331,888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 6.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농림해양수산</b>		<b>합계</b>	59,248	68,742
22	<b>농업법인에 대한 감면</b> -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소 계	0	3,883
		등록면허세	0	3,883
23	<b>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b>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0,779	12,136
		재 산 세	10,779	12,136
24	<b>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b>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용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6,364	4,416
		등록면허세	6,364	4,416
25	<b>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의2)	소 계	42,105	48,307
		재 산 세	42,105	48,307
		-		
		-		
		-		
		-		

## 7. 산업 . 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산업·중소기업</b>		<b>합계</b>	213,740	162,851
26	<b>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b>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①·②) -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소 계	9,902	13,340
		재 산 세	9,902	13,34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27	<b>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 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 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①·③)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소 계	38,373	38,590
		재산세	38,373	38,140
		등록면허세	0	450
		-		
		-		
		-		
28	<b>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감면(50%),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소 계	20,549	20,624
		재산세	20,549	20,624
		-		
		-		
		-		
29	<b>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45,215	17,609
		재산세	45,215	17,609
		-		
		-		
30	<b>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b>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22,855	20,644
		재산세	22,855	20,644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31	<b>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b>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산업지식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소 계	0	792
		재 산 세	0	792
		-		
		-		
		-		
		-		
		-		
		-		
32	<b>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b>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41,561	41,231
		재 산 세	41,561	41,231
33	<b>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80)	소 계	40	214
		등록면허세	40	214
34	<b>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b> -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2,508	3,122
		재 산 세	2,508	3,122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35	<b>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119①2·6·12·15·16·17·19·23·24·25·26·27·29, §120①5·11·15·16·19·20·21·22·23·25, §120⑥2·4·9·10·12·13), 50%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삭제)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등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1,2,4,5,6,7호) -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⑦)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32,738	6,686
		등록면허세	32,738	6,686
		-		
		-		
		-		
		-		
		-		

## 8.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수송 및 교통</b>		<b>합계</b>	187,585	196,110
36	<b>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b>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소 계	187,585	196,110
		재산세	187,585	196,110
		-		
		-		
		-		
		-		

## 9.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국토 및 지역개발</b>		<b>합계</b>	566,861	519,953
37	<b>산업단지에 대한 감면</b>	<b>소 계</b>	444,721	451,318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b>재 산 세</b>	444,721	451,318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38	<b>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b>	<b>소 계</b>	122,140	68,635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b>재 산 세</b>	122,140	68,635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		
	-	-		

## 10. 국 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국 가</b>		<b>합계</b>	8,746,010	9,892,236
39	<b>국가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b>소 계</b>	8,690,030	9,876,337
		재 산 세	8,689,976	9,869,119
		등록면허세	54	7,218
		-		
40	<b>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b>소 계</b>	55,978	15,898
		재 산 세	55,978	15,898
		-		

## 11. 기 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b>기 타</b>		<b>합계</b>	85,456	45,676
41	<b>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b>소 계</b>	56,139	16,075
		등록면허세	56,139	16,075
		-		
		-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6년(결산)	'17년(추계)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		
42	<b>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b>	<b>소 계</b>	28,362	28,506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b>재 산 세</b>	28,362	28,506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		
		-		
43	<b>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b>	<b>소 계</b>	955	1,096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등록면허세	955	1,096

## Ⅲ.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 1. 지역통합재정 총괄 규모

#### 1-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액 (B - A)	증감율
합 계	621,721	643,003	21,282	3.42%
마 포 구	594,239	614,516	20,277	3.41%
공사·공단	16,380	17,389	1,009	6.16%
출자·출연기관	11,102	11,098	△4	△0.04%

#### 1-2.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예 산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합 계	643,003	100	559,027	518,623	81,776	0	42,604	0
시도, 시군구	614,516	95.57	530,540	503,183	70,357	0	40,976	0
공사·공단	17,389	2.70	17,389	4,342	11,419	0	1,628	0
출자·출연기관	11,098	1.73	11,098	11,098	0	0	0	0

### 1-3. 전년대비 증감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합 계	621,668	643,003	34,146	5.56%
일반회계	460,539	503,183	42,644	9.26%
특별회계	70,116	70,357	241	0.34%
기타특별회계	70,116	70,357	241	0.34%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0	0	0	0
교육비특별회계	0	0	0	0
기 금	63,584	40,976	△22,608	△35.56%
일반지자체 기금	63,584	40,976	△22,608	△35.56%
교육청 기금	0	0	0	0
공사·공단	16,380	17,389	1,009	6.16%
출자·출연기관	11,102	11,098	△4	△0.04%

### 1-4. 세출성질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비중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교육비 특별 회계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
합 계	602,027	100	573,540	503,183	70,357		17,389	11,098
인건비	114,672	19.05	103,761	100,736	3,025		8,258	2,653
물건비	57,796	9.60	43,289	41,267	2,022		8,999	5,508
경상이전	342,614	56.91	341,597	329,129	12,468			1,017
자본지출	41,887	6.96	41,508	36,777	4,731		112	267
융자 및 출자	2	0.00	2	0	2			
보전재원	0	0	0	0	0			
내부거래	1,168	0.19	1,168	1,168	0			
예비비 및 기타	43,889	7.29	42,216	4,900	37,316		20	1,653

#### 4.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 3-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증감율
합 계	16,380	17,389	1,009	6.16%
공 사				
공 단	16,380	17,389	1,009	6.16%

##### 3-2. 재정현황

(‘15년결산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자산(A+B)	부채(A)	자본(B)	자본대비 부채비율	
총 계	3,670	2,870	800	△358.75%	
공 사	소 계				
	OO공사				
	:				
공 단	소 계	3,670	2,870	800	△358.75
	마 포 구 시설관리공단	3,670	2,870	800	△358.75
	:				

### 3-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예 산					세 출 예 산				
	소계	사업 수입	지원금	외부 차입	기타 수입	소계	사업비	부채 상환	기타	예비비
계	17,389	17,389				17,389	1,369			20
공사	소 계									
	OO공사									
	:									
공단	소 계	17,389	17,389			17,389	17,369			20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17,389	17,389			17,389	17,369			20
	:									

- ※ 1)사업수입 : 주요사업수익 및 대행사업비  
 2)지원금 :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지원금 세부 내역> 참조  
 3)외부차입 : 공사채, 공단채, 보증금 등  
 4)기타수입 :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기타 : 이자지급, 법인세 등

#### <지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기업명	계	국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공공기관 등)
소 계	해당없음			
OO공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해당없음			
: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 3-4. 세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구성비	예 산	
			공사	공단
합 계	17,389	100		17,389
인건비	8,258	47.5		8,258
물건비	8,999	51.8		8,999
경상이전				
자본지출	112	0.6		112
용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20	0.1		20
기타 <sup>1)</sup>				

※ 기타 :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

#### 4-1.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액 (B - A)	증감율
합 계	11,102	11,098	△4	△0.04%
출자기관	0	0	0	0
출연기관	11,102	11,098	△4	△0.04%

#### 4-2. 재정현황

( '16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A+B)	부채(A)	자본(B)	자본대비 부채비율	
계	12,017	1,042	10,975	9.49%	
출 자	소 계				
	기관명				
	:				
출 연	소 계	12,017	1,042	10,975	9.49%
	마포문화재단	604	1,036	△432	△239.81%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11,413	6	11,407	0.05%

### 4-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소계	사업수입 <sup>1)</sup>	지원금 <sup>2)</sup>	외부차입 <sup>3)</sup>	기타수입 <sup>4)</sup>	소계	사업비	부채상환	기타 <sup>5)</sup>	예비비	
계	11,001	4,389	4,049		2,563	11,001	9,165		1,784	52	
출 자	소계										
	기관명										
	:										
출 연	소계	11,098	4,276	4,361		2,461	11,098	9,445		1,599	54
	마포문화 재단	8,894	4,276	4,361		257	8,894	8,44			50
	장학재단	2,204				2,204	2,204	601		1,599	4

- ※ 1) 사업수입: 정부, 지자체 위탁 및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  
 2) 지원금: 정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3) 외부차입: 사채, 보증금 등  
 4) 기타수입: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 기타: 이자지급, 법인세 등

#### <지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기업명	계	국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공공기관 등)
소 계	4,361		4,361	
마포문화재단	4,361		4,361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				

-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 4-4. 지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구성비	예산	
			출자기관	출연기관
합 계	11,098	100		11,098
인건비	2,653	23.91		2,653
물건비	5,508	49.63		5,508
경상이전	1,017	9.16		1,017
자본지출	267	2.41		267
용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54	0.49		54
기타 <sup>1)</sup>	1,599	14.41		1,599

※ 기타 :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

※ 작성기준일 : 2017. 10. 1.현재

□ 지방공사·공단 현황

구 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 계				224	88	136	
공 사	소계						
	OO공사						
	:						
공 단	소계			236	85	151	마포구
	마 포 구 시설관리공단	2004.7.1	김영식	236	85	151	마포구

□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원			소재지
				계	정규직	기타	
합 계				48	46	2	
출 자	소계						
	OO기관						
	:						
출 연	소계			48	46	2	
	마 포 구 문 화 재 단	2007.9.12	이창기	46	46	0	마포구
	마포인재육성 장 학 재 단	2013.12.20	권오범	2	0	2	마포구

## IV. 정 원 표

### □ 일반직 현황

기준일 : 2017. 10. 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정무직	일 반 직										기 타		2016 정원	2015 정원	증 감
			소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구사	전문나	임기제	별정			
계	1,413	1	1,406	1	7	60	267	427	378	265	1	1	5	5	1,386	1,305	27
구 의 회 사 무 국	29	-	26	-	1	-	5	9	7	4	-	-	3	3	29	29	-
본 청	882	1	878	1	5	34	192	286	233	126	1	1	2	2	892	894	△10
동주민센터	363	-	363	-	-	16	48	91	97	111	-	-	-	-	363	281	-
보 건 소	102	-	102	-	1	9	18	33	28	13	-	-	-	-	102	101	-

### □ 기타직 현황

기준일 : 2017. 10. 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기 타 직					2016 정원 (인원)	2015 정원 (인원)	증감
	계	전임임기제	시간제/ 한시임기제	청원경찰	기 타			
합 계	92	42	48	2	-	84	83	8
본 청	58	15	41	2	-	60	56	△2
보 건 소	14	10	4	-	-	15	27	△1
사업소	17	17	-	-	-	-	-	17
동주민센터	3	-	3	-	-	9	9	△6

## V.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편성목	통계목	2017년 예산액	2018년 이월액	사 유	비 고
					<b>합 계</b>	<b>12,155,874</b>		
관광사업 육성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운영	여행자 편의시설 내 추가 시설공사 및 사무기기 구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7,026	87,026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과 윗잔 다리 어린이공원 일대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 자문단 회의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명시이월이 요구됨	관 광 과
관광인프라 확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4,000	4,000		
정보인프라확충 과 구민정보화 수준향상	영상정보 유지관리	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00,000	1,000,000	2017.10월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방범용 CCTV 장소선정, 심의위원회개최, 행정예고 등 절차상 올해 원인행위가 어려 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 업예산의 명시이월 필요	전산정보과
정보인프라확충 및 역량강화								
정보인프라확충 과 구민정보화 수준향상	CCTV 관제센터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000	1,500,000	2017.11월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었으나 통 합관제센터 구축장소인 마포구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이전이 '18년 4월로 예정되어있어 사업기간지연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사업진 행을 위해 명시이월이 필요	전산정보과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지역경제활성화	도화, 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	용강동 상점가 가로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상징조형물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80,000	480,000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을 위 해 2017. 9월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 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17. 11. ~ '18. 3.) 등의 절차상 시설비로는 연내 원인 행위가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을 위해 명시이월 필요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살리기								
주민생활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가칭)염리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07,211	1,088,686	서울시 투자심사, 용역발주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설계용역 발주 실시(시기 미도래)	복지행정과
지역복지역량 제고								

정책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편성목	통계목	2017년 예산액	2018년 이월액	사 유	비 고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내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0	20,000	2018. 4월 준공예정인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 시설의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도 국고 보조금(문체부) 70,000천원을 명시이월하고, 18년도 구비 160,000천원 편성 후,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등을 일괄집행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중앙도서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30,000	30,000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20,000	20,000		
영유아 및 여성 복지 증진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염리2구역 내 구립 어린이집 대체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77,190	377,190	염리2구역 도서관 및 어린이집(염리어린이집 대체신축) 건립공사가 사업지연으로 인해 2018년도 공사 착공예정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아현동 주민편익복합 시설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7,500	7,500		
		도화현대홈타운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	민간자본 이전	민간위탁 사업비	150,000	150,000		
도시기반시설 확충	송문길 도로확장 사업	송문길 도로 확장 ( B=8m, L=333m)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00	200,000	2017.10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작성 및 열람공고, 토지 감정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상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	토 목 과
도로개설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포대로 보도정비	마포대로 보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00	300,000	2017.10월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보도정비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市 보도환경개선과), 공사발주 등의 절차상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	토 목 과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	토정로37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토정로37길 주변 보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00	300,000		
	삼개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삼개로 주변 보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00	300,000		
21C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95,055	495,055	시비지원 지연 및 입찰참가업체 부족으로 재입찰공고 진행 등 용역착수 지연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정책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편성목	통계목	2017년 예산액	2018년 이월액	사 유	비 고
단위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000	29,000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지연으로 인해 2018년 공사 착공 예정	보건행정과
보건소 기능 강화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292,105	279,955		
				감리비	5,000	5,000		
				시설부대비	2,100	2,100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0	16,000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아현보건지소 건립	아현보건지소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326	174,326	아현보건지소 준공이 2018.3월로 예정되어 있어 시범운영기간에 맞추어 구매예정	보건행정과
보건소 기능 강화								
선진교통 행정구현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97,000	497,000	서울시 투자심사(2018.2월 예정) 추진으로 연 내 설계용역 발주가 어려움	교통행정과 (주차장)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여가시설확충 및 관리	당인동 부군당 보존 관리사업	당인동 부군당 보존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8,448	28,448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에 대한 시 민속문화 재 등록으로 시보조금 예산 확보 후 당인동 부군당 보존관리사업 실시	문화진흥과 (발전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도시 조성								
향토문화 보존								

# VI. 공유재산 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종 별	2016년도말 현재		2017년도말 (추정)		2018년도말 (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총 계	계	196,617	2,791,017,020	191,903	2,744,576,064	191,903	2,883,592,487	
	토지	4,540	2,446,427,053	4,428	2,392,887,861	4,428	2,518,753,763	
	건물	168	322,012,338	156	328,763,031	156	341,913,552	
	기타	191,909	22,577,629	187,319	22,925,172	187,319	22,925,172	
행정재산	토지	4,202	2,390,425,540	4,109	2,336,407,107	4,109	2,459,302,121	
	건물	168	322,012,338	156	328,763,031	156	341,913,552	
	기타	191,909	22,577,629	187,319	22,925,172	187,319	22,925,172	
일반재산	토지	338	56,001,513	319	56,480,754	319	59,451,642	
	건물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Ⅶ.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일반회계		이전 기금 현황		비고
	부서명	전출금	기금명	전입금	
	계	915	계	915	
1	총무과	50	남북교류협력기금	50	
2	총무과	918	재난관리기금	918	
3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0	노인복지기금	100	
4	가정복지과	100	양성평등기금	100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 Ⅷ. 2016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등

###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납액 (3)	불납결손액 (4)	미수납액 (2-3-4)	비 고
합 계	551,337	625,490	593,941	2,653	28,896	
일반회계	476,776	530,216	510,397	2,187	17,632	
특별회계	74,561	95,274	83,544	466	11,264	

###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1)	예산성립후 증감액(2)	예산현액 (1+2)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51,337	21,027	572,364	466,066	33,341	72,957
일반회계	476,776	13,934	490,710	441,532	21,071	28,107
특별회계	74,561	7,093	81,654	24,534	12,270	44,850

○ 2017년도 결산전망(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전망(추정)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불용액 (라)	(라)/(가) (%)	예산현액 (가)	지출추정액 (나)	이월 추정액 (다)	불용 추정액 (라)	(라)/(가) (%)
계	572,364	466,066	33,341	72,957	12.75	626,691	514,364	29,556	82,771	13.21
일반회계	490,710	441,532	21,071	28,107	5.73	539,781	485,803	18,945	35,033	6.49
특별회계	81,654	24,534	12,270	44,850	54.93	86,910	28,561	10,611	47,738	54.93

# IX.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 I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기획예산과-3222(2017.3.14)호)

## II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7. 8. 14(화) ~ 2017. 8. 28(15일간)
- 설문 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PCRM회원대상 E-Mail 발송, 홈페이지배너 연계)
- 설문 인원 : 열람인원 2,819명/ 참여인원 : 421명
- 조사 문항 : 15문항
- 설문 항목
  - 설문응답자 기본 정보 5개 항목
  - 투자 분야 및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사업 선정관련 9개 항목
  - 기타 자유기술 1개 항목
- 설문 결과 : 제안내용에 대한 부서검토 및 2018년 예산편성시 반영

## III 설문결과

### 1 총 평

- § 2018년 우리구 재정운영은 '재정범위 안에서 필수 경비만 반영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한다.' 는 의견이 49.6%로 가장 많은 답변을 보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44.7%로 전년대비 2.9%로 상승함
- § 분야별 예산 편성은 전년과 같이 '사회복지(23.8%)', '교육 및 문화관광(21.9%)' 순으로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임
- § 각 분야별 의견은 대체로 작년과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지역경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7.5%상승한 33.3%의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환경·복지분야】에서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이 전년 대비 4% 상승한 32.3%로 높은 응답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 §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사업에서 전년대비 다양한 강좌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가 7.2%상승해 29.9%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 올해 추가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관리가 2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2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 □ 응답자 기본 자료

#### ① 성별

1. 귀하의 성별은?			
남자	230	54.6%	
여자	191	45.4%	
합계	4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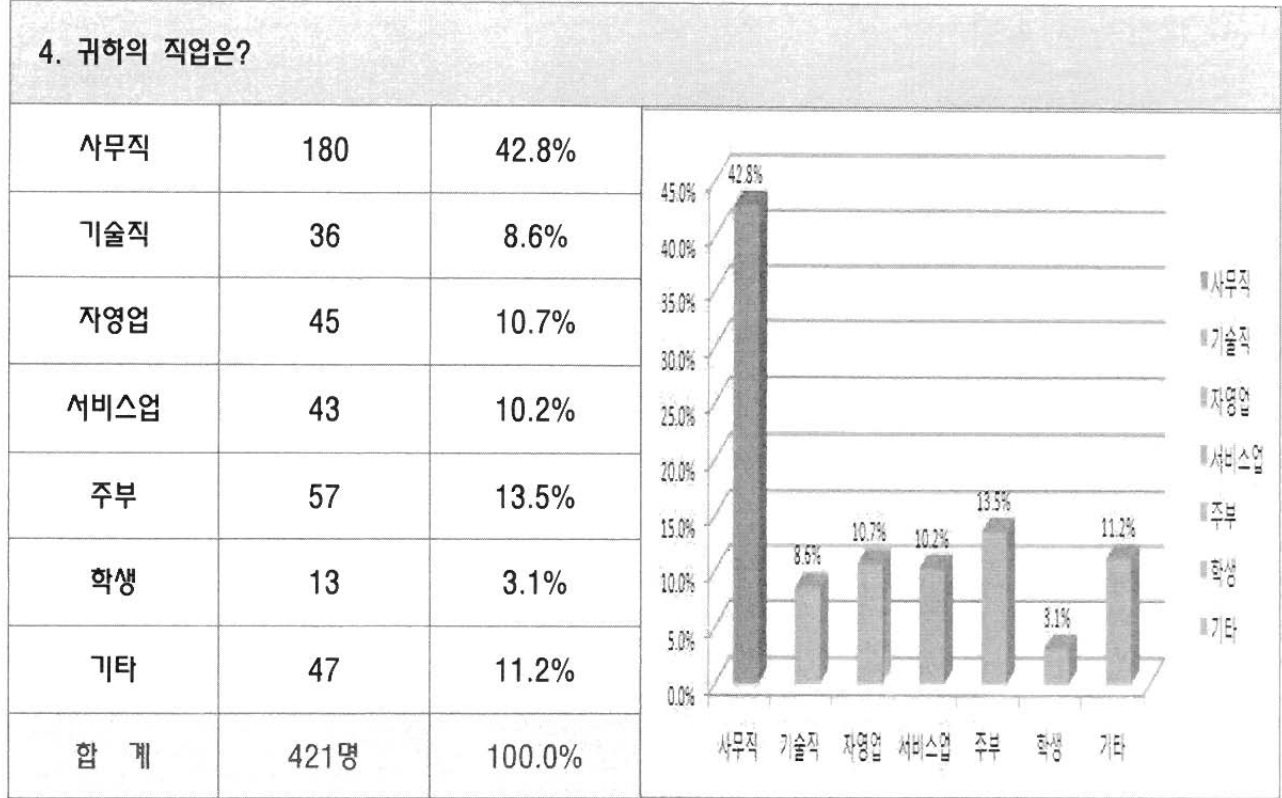
#### ② 연령대

2. 귀하의 연령대는?			
10대	5	1.2%	
20대	31	7.4%	
30대	103	24.5%	
40대	138	32.8%	
50대	98	23.3%	
60대 이상	46	10.9%	
합계	4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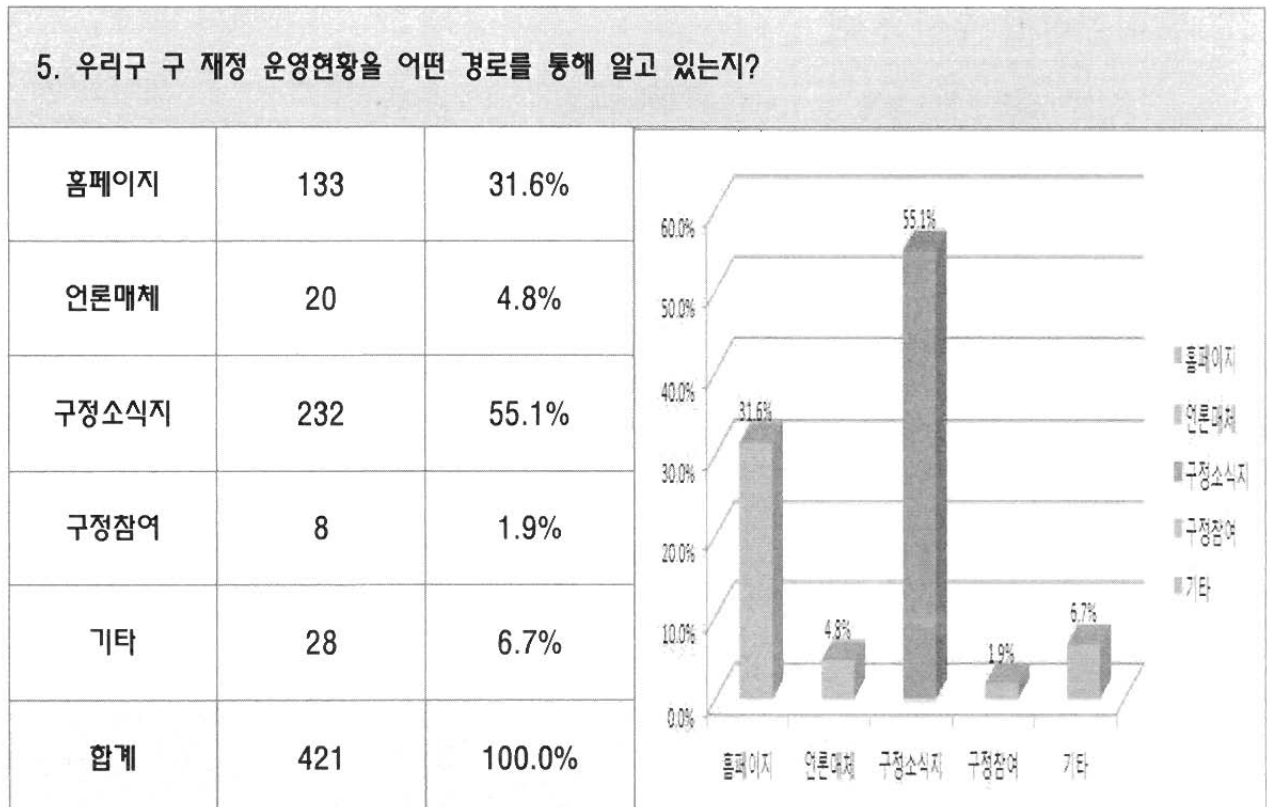
#### ③ 거주지

3. 귀하의 거주지(사업장 소재지)는?					
공 덕	24	5.7%	합 정	26	6.2%
아 현	18	4.3%	망 원1	25	5.9%
도 화	23	5.5%	망 원2	26	6.2%
용 강	9	2.1%	연 남	25	5.9%
대 흥	14	3.3%	성 산1	26	6.2%
염 리	9	2.1%	성 산2	58	13.8%
신 수	17	4.0%	상 암	46	10.9%
서 강	24	5.7%	기 타	28	6.7%
서 교	23	5.5%	합 계	421	100.0%

④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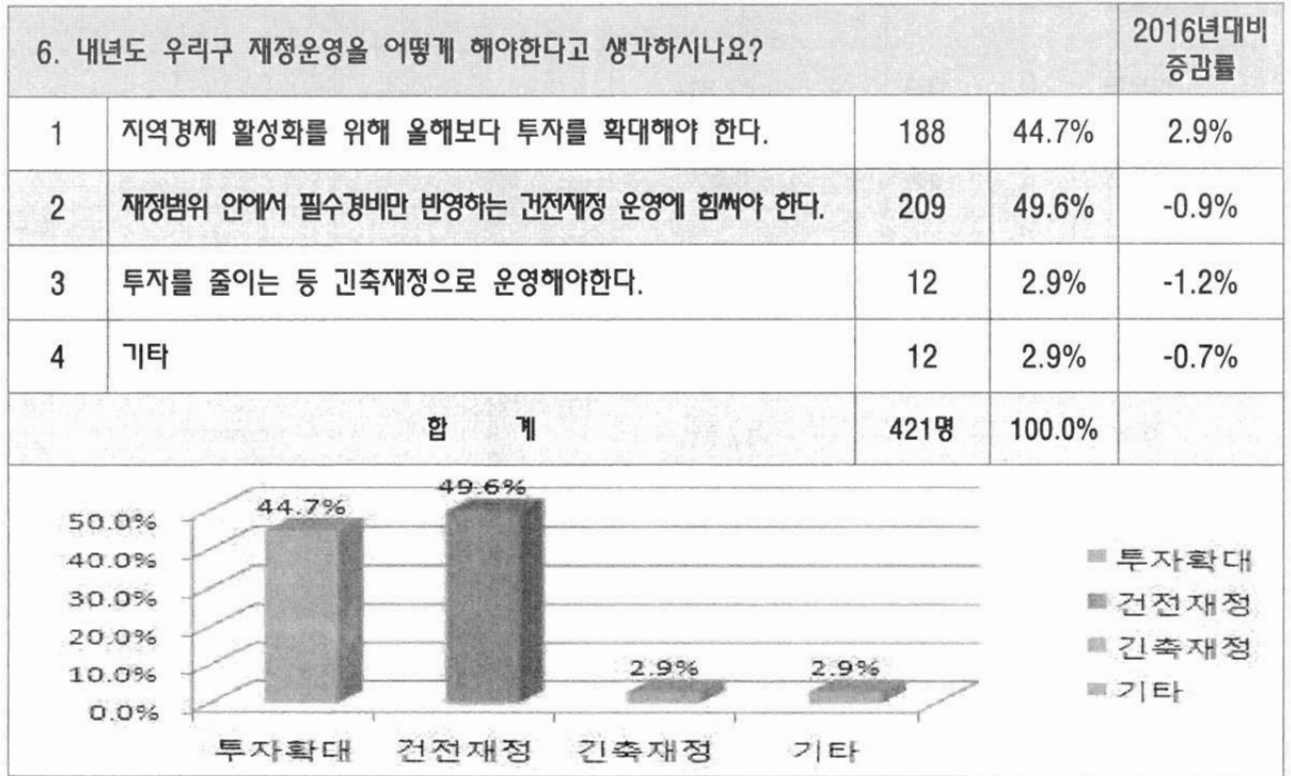


⑤ 정보 수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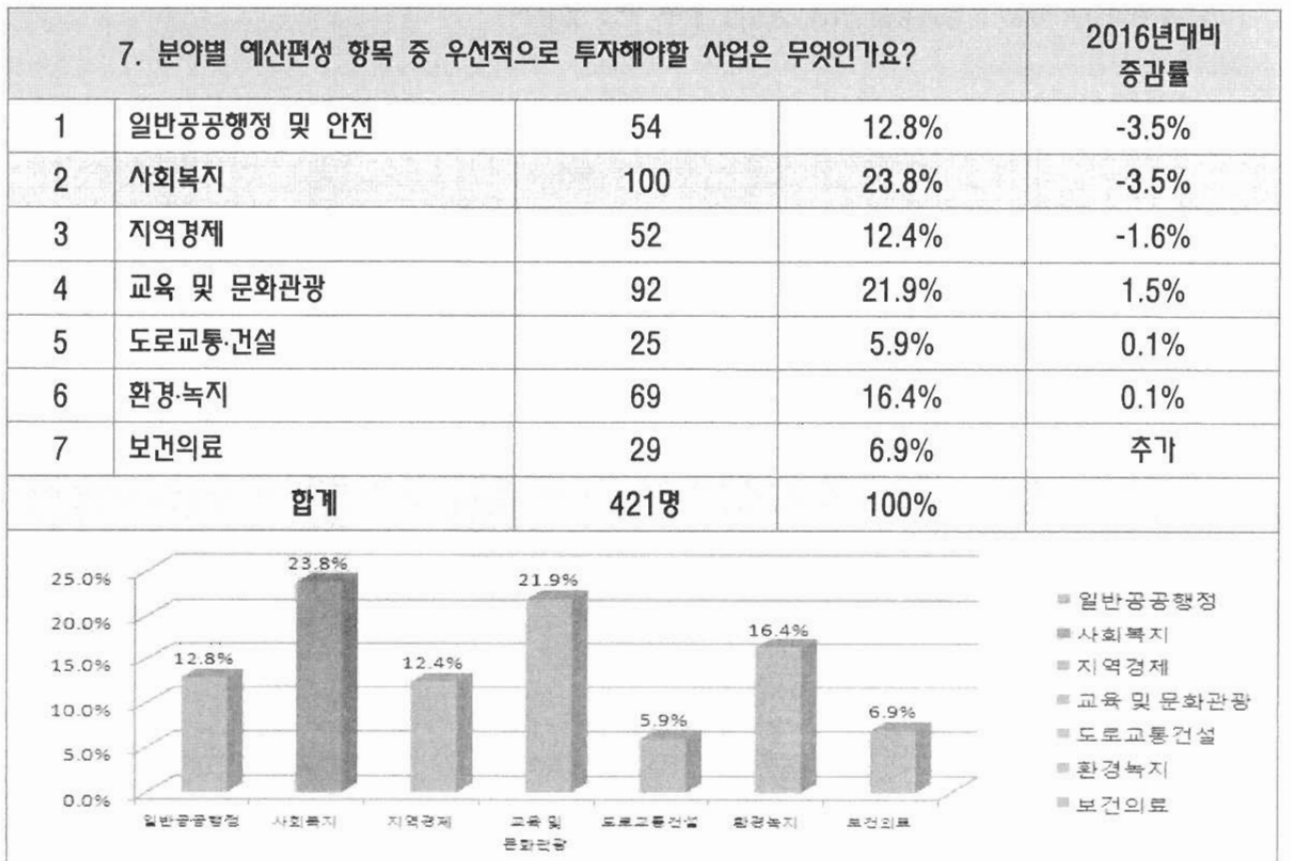


## □ 재정운영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주민의견

### ⑥ 재정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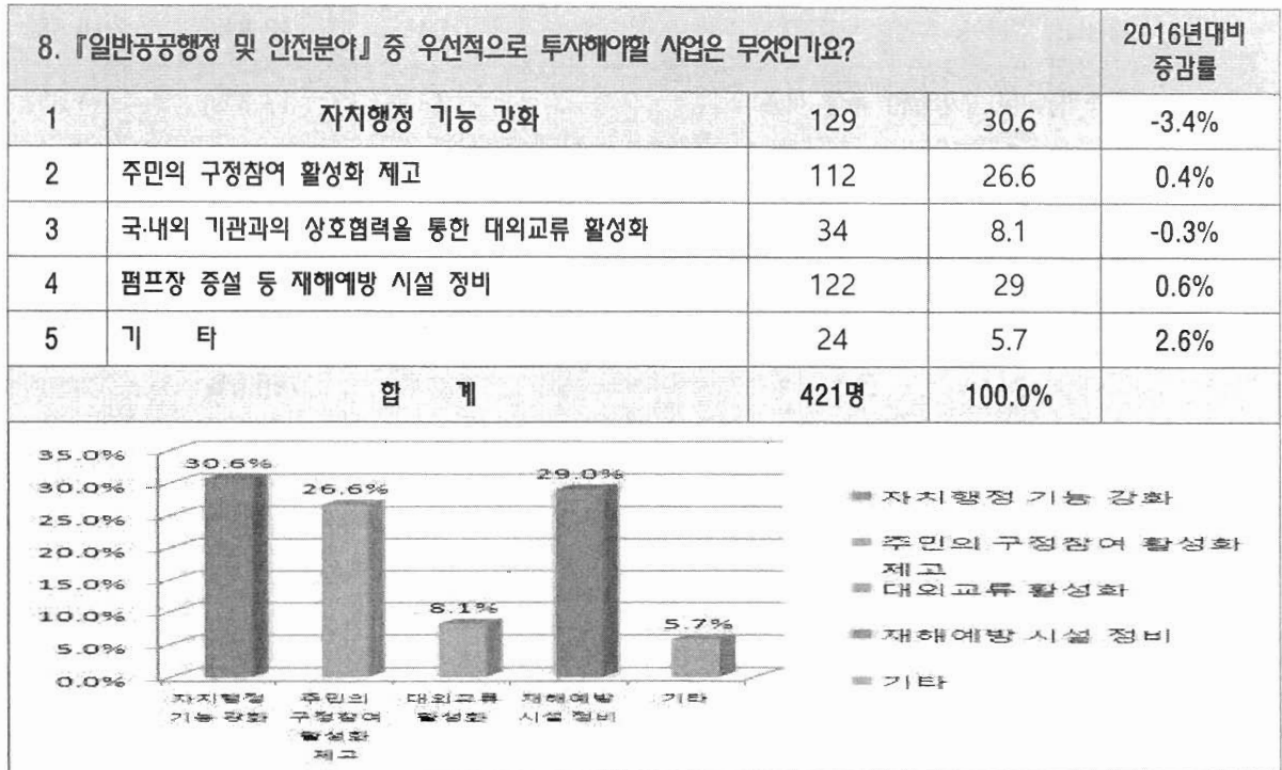


### ⑦ 투자 분야별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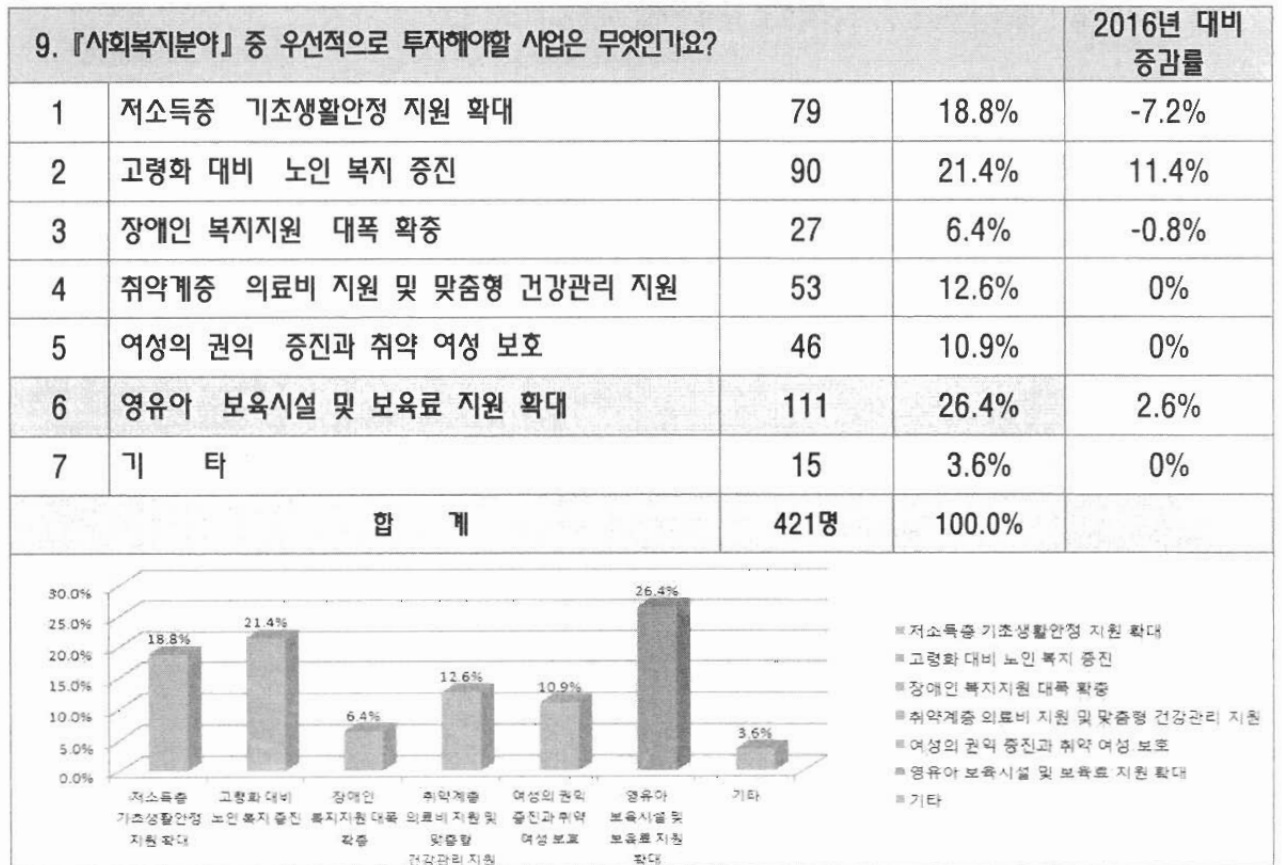


□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사업 주민의견 분석

⑧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우선 순위



⑨ 사회복지분야 우선순위



⑩ 지역경제분야 우선순위

10. 『지역경제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2016년대비 증감률
1	재래시장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54	12.8%	-6.6%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73	17.3%	-1.0%
3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139	33.0%	-0.9%
4	맞춤형 구인구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40	33.3%	7.5%
5	기 타	15	3.6%	1.1%
<b>합 계</b>		<b>421명</b>	<b>100.0%</b>	

사업명	비중 (%)
지역상권 활성화	12.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17.3%
물가안정	33.0%
새로운 일자리 마련	33.3%
기타	3.6%

⑪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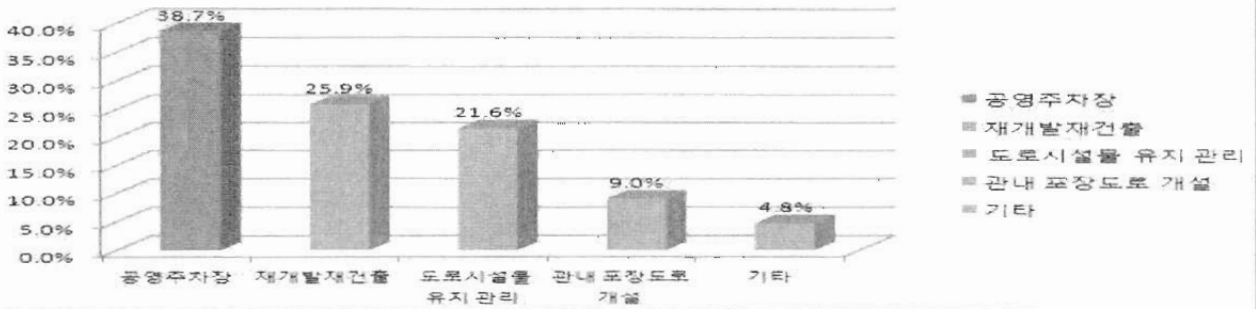
11.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2016년 대비 증감률
1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98	23.3%	-0.8%
2	다양한 강직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126	29.9%	7.2%
3	구립 도서관 등 지역 내 도서관 활성화	89	21.1%	-2.7%
4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102	24.2%	-1.3%
5	기 타	6	1.4%	-2.5%
<b>합 계</b>		<b>421명</b>	<b>100.0%</b>	

사업명	비중 (%)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23.3%
평생교육 강화	29.9%
도서관 활성화	21.1%
학교시설 개선	24.2%
기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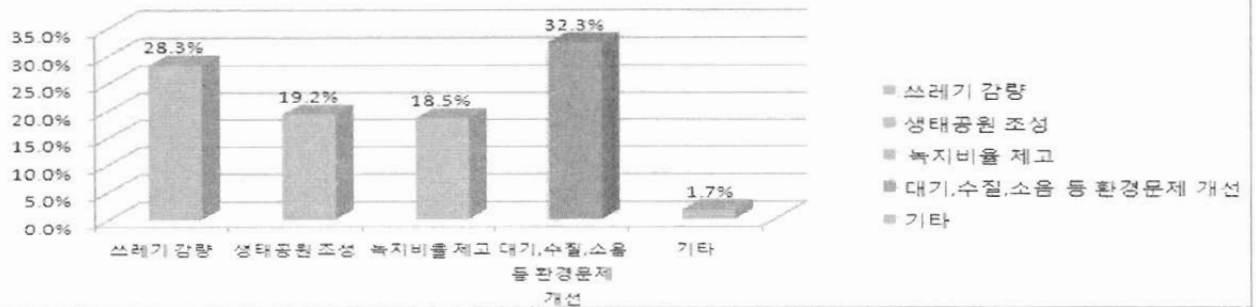
⑫ 도로교통·건설 분야 우선순위

12. 『도로교통·건설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2016년 대비 증감률
1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시설확충	163	38.7	0.7%
2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109	25.9	-1.5%
3	관내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1	21.6	1.7%
4	관내 포장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38	9	-0.1%
5	기 타	20	4.8	-0.7%
<b>합 계</b>		<b>421명</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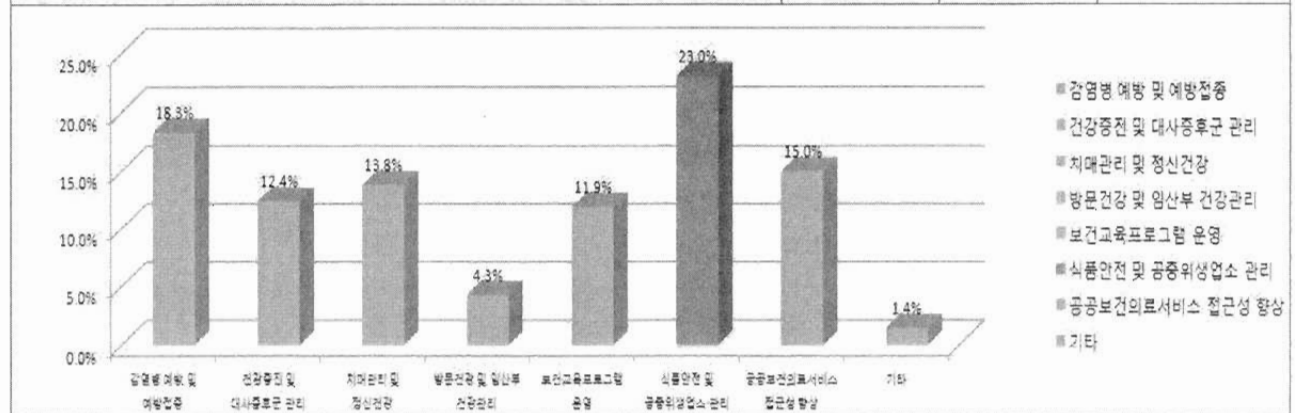
⑬ 환경·녹지분야 우선순위

13. 『환경·녹지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2016년 대비 증감률
1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 활성화로 도시환경개선	119	28.3%	2.2%
2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자연친화적 환경정비	81	19.2%	-4.7%
3	도시녹화사업을 통한 녹지비율 제고	78	18.5%	-0.2%
4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	136	32.3%	4.0%
5	기 타	7	1.7%	-1.3%
<b>합 계</b>		<b>421명</b>	<b>100.0%</b>	



⑭ 보건·의료분야 우선순위

14. 『보건·의료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비 고
1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77	18.3%	추가된 항목
2	건강증진 및 대사증후군 관리	52	12.4%	
3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58	13.8%	
4	방문건강 및 임신부 건강관리	18	4.3%	
5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50	11.9%	
6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97	23.0%	
7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63	15.0%	
8	기 타	6	1.4%	
<b>합 계</b>		<b>421명</b>	<b>100.0%</b>	



⑮ 기타 주요 의견

15.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업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건수 : 192건

검토부서	주 민 의 견
가정복지과	<p>어린이집등 사회복지시설의 누수방지 공사와 외관 청소&amp; 도색등에 우선적인 예산 편성을 바랍니다.</p>
	<p>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확대를 바랍니다.</p>
	<p>아이를4년을기다렸는데도어린이집에보내지못하고있습니다.제가전업주부라서남들모두편법을 써서라도보낼때난아이와함께아이데리고갈곳도많지않은여건을견뎌야하더라도...아이는커가고 이제는 유치원에 보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다니지 않은 우리아기는 유치원은 보낼수 있거나한건지...1</p> <p>답답해서푸념해봅니다. 어린이 집을 늘리든지, 가정형어린이집도 믿을수 있게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세요</p> <p>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교실이나 어린이집 등 확충해주시고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데에 예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공보담당관	<p>소식지를집마다배주해주세요예산올어떻게쓰는지, 주민들의의견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마포구소식, 다양한문화소식등을알려주는소식지를집마다배부해주세요</p> <p>홈페이지가활성화되어있는건알지만큰효과를못보는거같습니다.</p> <p>예산부담이적지않겠지만지역주민활성화를위해서도해보는것도괜찮을거같아서입니다.</p> <p>부족한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p>
공원녹지과	<p>조성된 녹지를 잘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은 했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풀밭을(월드컵로-월드컵 경기장에서 구룡사거리, 월드컵 북로)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드컵로 도로변이나 공원 상암산 오솔길 주변에 여러 종의 나무를 심은 것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며 오솔길 따라 울타리 처럼 심은 나무들은 자라면서 바람을 막을 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서 공원 오솔길을 걸을 때 잘 눈에 띄지 않아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나 자유로움 보다는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허리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 나무로 심으시던가 관리하여 잘라 주셨으면 합니다.</p>
	<p>운전면허시험장철거후공원녹지공간조성 철로지하화기반조속추진</p>
	<p>마포구독막로28길10 인도(장애인표시)에 대리석 표시 눈이내려 덮으면 많이 미끄러짐. 빗길에 자건거가 지나가도 많이 미끄러움. 옆 소나무 심어져 있는부분 턱이 없이 인도와 같은 선상에 있으므로 비가오면 흙이 내려오고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 뿌리고 여분의 눈을 화단으로 치워서 소나무도 많이 죽고 일반 조경으로 심은 나무가 군데 군데 말라서 뽑고 심지 않아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화단턱이 만들어져야하며 인도에 미끄러운 부분을 제거해 사고예방이 필요하며 염화칼슘으로 죽은 나무들과 화단정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매 여름마다 연남동 철길공원(엔트럴파크)의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만 왜 그러는지 원인파악과 시설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원덕분에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었으니 충분히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p>

검토부서	주 민 의 견
관광과	<p>마포구는 서울에서도 특히 젊은문화(홍대,연남동,망원동등등)가 유명한 곳이며, 관광적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p> <p>1. 성산동 및 연남동등등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 문제</p> <p>-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연남동의 경우 최근 많은 상업적공간들이 신설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국내인 내지는 외국인의 유입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좁은 2차선 도로에 버스의 주정차 및 많은 교통량때문에 체증이 일어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 및 통행방해가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버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게 교육이 필요한 방법이나 시설 및 단속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한강변 공원을 활성화 시켜 서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하여 이동식당 및 공연 그리고 공원내 놀이시설 및 이동시설을 확대하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외국인의 관광유치를 위한 안내시설을 추가한다.</p>
	<p>디지털문화관광단지개발하여관광객유치하자.</p> <p>예)중국천문대계처럼LED조명설치하여마포구의관광명소를만들어수익창출과더불어고용기회는 물론지역경제활성화시키자.</p> <p>예산이없으면민자유치하면된다.</p>
교육청소년과	<p>학교 및 공원 주위 환경 개선</p>
	<p>중고등학교 진학교육 투자</p>
	<p>직업교육훈련</p>
	<p>청소년 직업교육센터 건립(마포구에서 기반을 잡고 살수있는 뿌리기반 만들기)</p>
	<p>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내 축구 명문학교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각 지역의 잘하는 선수들이 울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보네요.</p>
	<p>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 행사가 다양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됐으면 합니다..초등 자녀를 위한 화상영어, 영어캠프 등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솔직히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화상영어는 정말 저렴한지 알았는데 사실과 비교해서 저렴하지 않습니다..심지어 1:1도 아닌 1:3 1:4이면서 말이죠..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가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마포 신문을 통해 알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오는 구청소식지로,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신청 조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같은 마포라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저는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찾아보니 그나마 아는 경우이지만 대부분 마포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적극적인 홍보와 좀 더 다양한 교육과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일반 어린이에게도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마포지역이 교육은 부족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제가 초등1때부터 꼭 마포에서 산 마포인으로서 친정뿐 아니라 시댁도 마포인이 엄마로서 아이를 끝까지 마포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p>
	<p>마포는예로부터문학가들이모여들던경치가빼어난지역입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서 문학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지원이 미약하고 문학관 하나없는 곳입니다.인문학의 활성화를위해 마포 문학관 이 있어야 합니다.</p>

검토부서	주 민 의 건
교통지도과	공덕초등학교 주위에 불법주차로 인해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불법 주차 단속을 통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남동 주변 불법주차차량 단속좀 꾸준히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건의합니다. 상수 — 대흥 —공덕 구간 3차로 주정차때문에 불편이 많음
	1.인도에불법주차되어있는차량들에대해서단속강화 2.택시승하차전용정류소지정(도로에대기중인택시로인해서정체가너무심함)
교통행정과	이젠 거의 모든 집에 차가 있는데 이동하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나 차 들 곳이 적당하지 않음. 그래서 동네 곳곳에 최대한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장(신수로3길 현석빌라, 밤섬현대아파트주변 도로 주차로 교차 왕복 불가. 주차대체시설 조성)
	점점 자가 차량을 통한 이동을 하여 소상공업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색있는 자영업도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려우므로 내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가격 및 공간확보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의 구축이 지역 소상공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을 통한 시설 확충 뿐 아니라 융통성있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덕역3번출구쪽롯데캐슬과공덕삼성아파트사이의곡선도로에과속방지턱을설치하면좀더안전할 것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책 거리를 테마로 한 기차길 공원이 있는 창전동 주변에 영어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상암동내에 어린이도서관이 부족합니다. 마포육아정보센터내 도서관이용이7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초등생이 이용불가입니다. 영유아책보다 초등생용 책이 더 많은데 나이제한을 두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착오입니다..나이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문화진흥과	구민들을 위한 축제나 행사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홍대 앞 인디밴드 공연 문화 지원
	문화활동 저변화를위해 많은 재정지원 요망
보건행정과	직장인을 위해서 시간대를 야간에도 운영하는 보건서비스가 필요할것 같다.

검토부서	주 민 의 견
생활체육과	다양한 종목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대를 바람.
	성산2동에있는새터산의등산로및벤치,운동기구등을정비하여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조성하였으면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 애인과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제가 봉사로 죽을 췌어 어르신께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업이 찾동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캠프사업이 11월로 끝납니다.12월 1월 2월 3월은 어르신들이 죽을 굶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비로 충당해야하는데 부담이 클것 같습니다.흥내만 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과 실질적 도움을 진정으로 준다면 ,1년 12달 사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자원봉사 모집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종홍대선과 롯데몰이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되고, 월드컵대교가 빨리 개통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일반 구민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밤늦게 귀가하다 옆에서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거나 밤잠을 설치 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동물애호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모두 상생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희 동네는 캣맘들이 많은지 너무 심각합니다.
	일자리창출
	지역균등발전을위해상대적으로소외된상권지역을활성화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과거에진행하였던경전철추진도같이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할주민센터의시설을해당주민들에게적극적개방을권합니다 연남동의경우옥상식물을보려고올라갔으나동장님이심어놓은작물이라 출입조차할수없다고직원이말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마치개인사유물인양사용하고있습니다
	전산정보과
사각지대에 CCTV 등의 방법 카메라 설치로 치안 확립 및 신호위반차량 단속	

검토부서	주 민 의 견
토목과	<p>걷고싶은거리가되기위해서는보행로의확보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도로를넓히기보다는인도를넓혀주세요</p>
	<p>하수 및 도로정비</p>
	<p>도로정비에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일본도교만가더라도도로가잘정비되어  도시자체가깔끔한느낌을주는것같습니다  구멍인난도로페인트색이바란도로라인등정비하면더깔끔한마포구가될것같습니다(예로홍대거리  어울마당로쪽새로도로정비하니너무깔끔하고보기좋았습니다)</p>
	<p>망원1동 재래시장 관련도로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정비가 필요함</p>
	<p>홍대안에 있는 서교 초등학교주변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거같아요.  홍대부근 인도 개선이 되길 희망합니다</p>